

독일 : 유럽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 도입을 둘러싼 쟁점

강하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적용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활동이 인류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 및 환경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CSRD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통일적인 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 점으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총 12개의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초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7월 31일 이 중 첫 번째 표준(ESRS 1)을 채택해 발효를 앞두고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실질적으로 ESRS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ESRS는 CSRD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CSRD와 ESRS의 도입배경과 내용, 현재까지의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

■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시행 배경

EU는 CSRD 시행 이전에도 특정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제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유럽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을 두고 있었다. 이는 투자자, 시민단체,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기업이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뢰도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많아 지속가능성 보고의 품질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새롭게 도입된 CSRD에서는 공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일된 표준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요구 사항이 새롭게 정의되었다.¹⁾

주요 내용

CSRD는 보고의무 기업의 확대와 ESRS에 따라 확장되는 보고사항,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무적 외부 감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소규모 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과,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① 250명을 초과하는 종업원, ② 2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자산 총액, ③ 4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세후 매출 중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기업이 포함되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보고의무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적용대상 기업은 제반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ESRS에 따른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ESG 요소가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험 및 기회뿐만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보고해야 한다.²⁾

■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채택 과정

CSRD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의무적 보고표준인 ESRS의 형태로 문서화되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한다. 지속가능성 보고의 표준화는 개별 산업 부문과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합적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보고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³⁾ 현재 제안된 ESRS는 EU의 독립적

1) Haufe, "Die wichtigsten Datenpunkte für den Nachhaltigkeitsbericht", 2023.6.2.

2) Enste., D. et al.(2023), "Nachhaltigkeitsberichtspflicht: CSRD-Monster oder Motivator?", *IW-Kurzbericht*, Nr. 55, 1-3.

3) Haufe, *op. cit.*

자문기관인 EFRAG가 투자자, 기업, 감사인, 시민단체, 노동조합, 과학자 및 국가표준기구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개발한 것이다. EFRAG가 2022년 11월 EU 집행위원회에 최초 제출한 초안은 공청회를 통해 수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가 수정되었다.⁴⁾ EU 집행위원회가 2023년 7월 31일 채택한 최종 버전의 ESRS 1에서는 1,178개의 보고 내용 중 265개가 선택적 보고사항이다.⁵⁾

주요 내용

12가지 표준 제시

ESRS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총 12개의 항목에 대한 표준으로 이루어져 있고, 2개의 일반 공시기준과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의 ESG 요소에 대한 10개의 추가 공시기준으로 나뉜다. 이 중 일반 공시기준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 요구사항과 기본 정보를 다루며, 추가 표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고용, 다양성 및 포용, 거버넌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⁶⁾

“이중 중요성”의 원칙

ESRS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시 정보의 중요도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별 정보의 보고 필요성이 기업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하에 효과적으로 판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때 기업의 판단은 “중요성 분석(Wesentlichkeitsanalyse)”에 따라 “이중 중요성(Doppelte Wesentlichkeit)”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중 중요성은 내부에서 외부로의 관점에서의 “영향적 중요성”과 외부에서 내부로의 관점에서의 “재정적 중요성”으로 구성된다. 영향적 중요성은 기업이 사회 및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적 중요성은 화석연료

4) 이로써 중소기업의 보고 부담을 덜기 위해 75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의무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기업은 정보 보고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성 분석”을 통해 더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된다. 의무적 보고 내용 중 일부는 선택적 보고로 변경되어 기업의 자체적 판단하에 어떤 정보를 보고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5) Europäische Kommission, “Fragen und Antworten zur Annahme europäischer Standards für die Nachhaltigkeitsberichterstattung”, 2023.7.31.

6) *Ibid.*

사용 금지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업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기회 또는 위험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기업은 ESRS의 각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정보가 두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고 의무를 진다.⁷⁾

기존 국제표준과의 비교

ESRS 발표 전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해 다양한 표준을 사용해왔다.⁸⁾ ESRS는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및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GRI)의 표준과 비교해 높은 일관성을 갖도록 개발되어 기존의 국제표준을 이용하던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ESRS에는 EU의 지속가능한 금융정책 및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딜 관련 지표가 추가적으로 반영되었다.⁹⁾

채택 현황 및 계획

ESRS 1의 최종 채택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7월 31일 총 12개의 ESRS 중 모든 산업부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첫 번째 표준인 ESRS 1을 최종 채택했다. CSRD는 EU 집행위원회에 ESRS의 위임명령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ESRS 1은 EU 의회 또는 이사회가 최대 4개월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자동 확정된다. 의회와 이사회는 ESRS 1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ESRS 1은 EU 관보 게재 후 발효될 예정이다.¹⁰⁾ ESRS는 2024년부터 3단계로 적용되므로 CSRD상 지속가능성 보고의무가 있는 기업은 2025년에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로 ESRS에 따라 보고하게 된다.

7)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 2023.7.19.

8)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ISSB), UN Global Compact(UNGC), ISO 26000,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EMAS), Deutscher Nachhaltigkeitskodex(DNK) 등이 있다.

9) European Commission, “The Commission Adopts the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2023.7.31.

10) *Ibid.*

ESRS 2의 채택 연기

CSRD는 EU 집행위원회가 2024년 6월 30일까지 ESRS의 두 번째 표준인 ESRS 2를 채택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10월 17일 ESRS 2를 기존 예정일보다 2년 연기된 2026년 중순까지 채택하기로 하는 안을 발표했다.¹¹⁾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우선 ESRS 1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로써 EFRAG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효과적인 업종별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EU 내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을 위한 표준 채택 기한 또한 2026년 중순까지 연기하고자 함을 밝혔다.¹²⁾

■ 독일 내 지속가능성 보고에 미치는 영향

기존의 지속가능성 보고의무

독일은 2017년 EU의 유럽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법률(CSR-RUG)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의무를 제도화했다. 해당 법상 보고의무가 있는 기업은 세후 매출이 4천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자산 총액이 2천만 유로를 초과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연 평균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상장기업이거나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이나 보험, 자산운용회사여야 한다. 현재 약 500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재무보고서 또는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환경, 사회 및 노동, 인권보호, 부패 및 뇌물 방지, 경영진 구성의 다양성 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¹³⁾ 보고에 요구되는 표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독일에서는 GRI 및 독일지속가능성행동강령(DNK)의 보고표준이 주로 사용된다. 법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한 경우에 대해 기업의 매출

11) Europäische Kommission, "Vorschlag für einen Beschluss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13/34/EU im Hinblick auf die Fristen für den Erlass der Standards für die Nachhaltigkeitsberichterstattung für bestimmte Sektoren und bestimmte Unternehmen aus Drittstaaten", 2023.10.17.

12) Haufe, "EU-Kommission will Sektor-Berichtsstandards auf 2026 verschieben", 2023.10.31.

13) IHK München, "Nachhaltigkeitsberichterstattung CSRD: Was gilt wann für wen?", 2022.1.31.

및 이익을 기반으로 최대 1천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기업의 확대

현행 CSR-RUG법은 2024년 여름까지 예정된 CSRD의 국내법 전환을 통해 적용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24년부터는 CSRD의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 현행법을 적용할 때보다 30배 많은 규모인 약 1만 5천 개 기업들에 지속가능성 보고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CSRD가 기업에 대량의 행정업무를 야기하는 부담으로 인식될지, 또는 지속가능성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동기부여 요소가 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편 CSRD의 국내법 전환 이후에는 기업의 보고 내용 및 구조 또한 ESRS에 의해 표준화된 안을 따르게 된다. 그동안 독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주로 사용되어 온 DNK 표준은 ESRS를 DNK에 통합해 보고의무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¹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CSRD와 ESRS가 현재 노동자 우위인 독일 노동시장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구인 경쟁력 확보를 도울 수 있을지에도 주목한다. 중점이 되는 부분은 지속가능성 보고가 구직자에게 ESG 영역에서의 기업 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직원 채용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다. 미래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중요한 구인 대상층인 독일의 젊은 세대는 기업의 ESG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구직 시 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14) Haufe, “DNK wird unter Berücksichtigung der ESRS weiterentwickelt”, 2023.10.4.

15) Enste., D. et al.(2023), *op. cit.*; Deloitte, “Gen Z and Millennial Survey Waves of Change: Acknowledging Progress, Confronting Set-backs”, 2023.7.19. 최근 딜로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1983~2004년 사이에 출생한 설문 응답자 2만 2천 명 중 절반 이상이 기업의 환경 정책과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에 회사의 채용 제안을 수락한다고 밝혔으며, 약 40% 정도가 노동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 조사 대상자 중 6분의 1은 기후 관련 고민으로 직장이나 업종을 이미 변경했다고 응답했고, 약 4분의 1이 미래에 그러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맺음말

CSRD의 시행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ESG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한편,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업의 보고의무가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CSRD가 기업 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실질적인 프로세스 변경이나 경영진의 사고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형식적 공시에 머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ESRS 2와 비EU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의 채택 기한을 2년 연기한 것은 기업의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과 EU 내 ESRS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CSRD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는 더욱 효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ESRS를 개발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EU가 궁극적으로 CSRD의 정책 목표를 유지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성공적인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KLI**